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33
----------	-----

제출년월일 : '98. 7. .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파주사랑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의 시정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파주시 지명 및 공공시설물 등의 명명절차를 제도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
- 나. 지명 등의 명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4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안 제5조의 ①항)
-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안 제5조의 ②항)
- 마.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안 제8조)
 - 1) 지명의 명명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 포함.)
 - 2) 공공시설등 명칭의 명명
 - 3) 지명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 4) 기타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바. 시장은 지명 등을 명명 하기전에 지명 등의 유래, 변천과정, 중복명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

파주시지명등의명칭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라함은 파주시 관할 구역안의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읍, 면, 동, 리)과 측량법 제57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등의 명칭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이라함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하여 조성된시설 및 지역, 기타 공공이용시설등을 말한다.
3. “지명등”이라함은 지명과 공공시설등의 명칭을 말한다.
4. “명명”이라함은 지명등의 명칭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지명위원회

제4조 (지명위원회) 지명등의 명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6조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명명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 포함)

2. 공공시설등 명칭의 명명

3. 지명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기타 지명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한다.

제10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계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명명절차

제13조 (사전조사) ① 시장은 지명등을 명명 하기전에 지명등의 유래, 변천과정, 중복명칭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제출) ① 안전은 소관부서의 관련국장 또는 담당관이 제출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안전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전에고) 시장은 지명등의 명명을 위한 안전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지명등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동·출장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사항통보등)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사항중 법적절차를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와 읍·면·동·리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측량법에 의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은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명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고시) ① 시장은 지명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시보등에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하는 사항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지명등의 명칭은 시장이 명명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공식명칭이 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홍보) 시장은 고시된 지명등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조례제24호)는 이를 폐지한다.